

「퇴직연금용 정기예금(만기지급형)」 특약

제1조 약관의 적용

퇴직연금용 정기예금(만기지급형)(이하 '이 예금'이라 한다)거래에는 이 특약을 적용하며,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예금거래기본약관, 거치식예금약관을 적용합니다.

제2조 예금과목

이 예금은 정기예금으로 운용합니다.

제3조 가입대상

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 금사업자로 합니다.

제4조 계약기간

이 예금의 계약기간은 6개월, 1년, 2년, 3년, 5년으로 합니다.

제5조 가입금액

이 예금의 가입금액은 1원 이상으로 합니다.

제6조 이자지급

이 예금의 이자는 만기이자지급식입니다.

제7조 자동재예치

- ① 이 예금은 재예치를 신청한 고객에 한하여 만기일에 당초 약정된 이자를 셈하여 원금에 가산한 금액을 최초 계약기간과 동일한 기간으로 재예치합니다.
- ② 최초 신규 가입시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을 위한 운용지시서 상에 자동재예치를 선택할 경우에는 이후 별도의 자동재예치 신청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.
- ③ 위 ① 내지 ②항에 불구하고 고객이 재예치 의사없음을 사전에 통지한 경우에는 자 동으로 재예치 하지 않습니다.
- ⑤ 재예치시 적용이자율은 제 8조에서 정한 이자율을 적용합니다.

제8조 적용이자율

- ① 이 예금의 만기해지시에는 신규가입일 또는 자동재예치일 당시 영업점 및 대구은행홈페이지에 고시한 이자율을 적용합니다.
- ② 이 예금의 중도해지시에는 가입금액에 신규가입일(또는 최종 재예치일)로부터 지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신규가입일 또는 최종 재예치일 당시 영업점 및 대구은 행 홈페이지에 고시한 중도해지이자율을 적용합니다.

제9조 특별 중도해지

제8조 제②항에 불구하고 퇴직연금제도에서 인정하는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

사유로 중도해지 하는 경우에는 신규가입일 또는 최종 재예치일 당시 영업점 및 대구은 행 홈페이지에 고시한 특별중도해지이자율을 적용합니다.

- 1. 퇴직 등 급여지급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
- 2.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령에서 정한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인 경우
- 3. 퇴직연금 전체(또는 일부)를 대구은행내의 다른 퇴직연금계약으로 이전하는 대구 은행내 계약이전의 경우
- 4. 사업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합병 또는 영업양도로 인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 의 동의를 얻은 경우
- 5. 사업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파산 또는 폐업
- 6. 관련법령의 변경으로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
- 7. 수탁자의 사임
- 8. 퇴직연금 수수료 취득
- 9. 퇴직급여를 연금형태로 지급하는 경우

제10조 예금 일부 해지

- ① 이 예금은 계약기간(자동 재예치된 경우에는 재예치된 계약기간) 중 만기해지 포함 하여 3회 이내에서 일부 해지가 가능합니다.
 - 단, 퇴직연금제도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을 위하여 이 예금을 가입한 경우에는 가입자별로 만기해지 포함하여 3회 이내에서 일부해지가 가능합니다.
- ② 퇴직급여를 연금형태로 지급하기 위한 인출 및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인출의 경우에는 위 ①항의 일부해지 횟수 계산시 포함하지 않습니다.
- ③ 예금 신규가입일 당일에는 일부 해지를 할 수 없습니다.
- ④ 위 ①항에 의해 일부 해지하는 경우 해지금액에 대하여 제8조에서 정한 이자율을 적용합니다.

제11조 기타

- ① 이 예금은 퇴직연금의 운용방법으로 운용되는 상품으로 질권 설정, 담보 제공, 지급정지 등은 불가능합니다. 다만, 퇴직연금제도에서 인정하는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담보제공이 가능합니다.
- ② 이 예금은 퇴직연금 운용지시에 의해 업무처리가 이루어지며, 통장은 발급하지 않습니다.
- ③ 상기 내용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정기예금 업무에 준하여 처리합니다.

부 칙

이 약관(특약)은 2014년 3월 6일부터 개정 시행합니다.